

치리회 의사 규정

제 1조 본 규정은, 총회규칙 제5장 제27조에 의한 '치리회 의사 규정'이다.

제 2조 이 규정에서 회의라 함은,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합보)와 총회산하 각부, 위원회(특별위원회포함)와 각 노회 및 그 산하 각부, 위원회(특별위원회포함)와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 등을 총칭한다.

제 3조 이 규정에서 의장이라 함은, 이 규정 제 1조에 규정한 각 회의에서 의사진행을 맡은 사회자를 가리킨다.

제 4조 각 치리회 의사진행상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총 회 : 본회의 헌법 정치의 규정에 의거 소집되는 회의를 말한다.
2. 회기(會期) : 회의의 개회시부터 파회 또는 폐회시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3. 개 회 : 회의가 소집되어 처음 열리는 것을 말한다.
4. 정 회 : 개회 후 회의 중 잠시 중단하는 것을 말한다.
5. 속 회 : 정회 후 다시 회의를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6. 산 회 : 회기가 여러 날 계속될 때 그 날의 회의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7. 속 개 : 회기가 여러 날 계속될 때 다음날의 회의를 시작 하는 것을 말한다.
8. 파 회 : 총회의 회기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9. 폐 회 : 총회 이외의 회의의 회기를 끝내는 것을 말한다.
10. 독 회 : 법안 또는 예,결산안 등 복잡한 안건을 심의할 때 사용하는 방법이다.
 - 1) 제1독회는, 제안 설명과 개략적인 질의
 - 2) 제2독회는, 제1독회를 거친 안건을 축조심의 수정
 - 3) 제3독회는, 자구 수정만하여 최종 결정 하는 것을 말한다.
11. 동의(動議) : 자기의 의사를 회의 절차에 따라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12. 재 청 : 동의에 찬성하는 것을 말한다.
13. 개 의 : 동의에 수정안을 말한다.
14. 재 개 의 : 동의에 또 다른 수정안을 말한다.
15. 헌 의 : 동의의 한 형태로 본회 산하 노회가 총회에서 결정할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말한다.
16. 제 안 : 동의의 한 형태로 본회 산하 상비부서가 총회에서 결정할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말한다.
17. 발 의 : 개인이 총회에서 결정할 안건을 상정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이는 정식 의안으로 채택할 수 없으며, 일정한 시간(자유토론시간)에만 할 수 있다.
18. 안 건 : 회의에서 토론 대상이 되는 주제를 말한다.

19. 의 제 : 안건이 토론중일 때 그 주제를 말한다.

20. 표 결(表決) : 안건을 심의하여 그 가부를 결정하는 것을 말한다.

21. 투 표(投票) : 표결의 한 방법을 말한다.

22. 회 원(會員) : 회의체의 정식 구성원으로서 선거권, 피선거권, 발언권, 결의권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제 5조 각 치리회의 의사진행 원칙은 다음과 같다.

1. 의사를 결정하는 원칙

1) 정족수의 원칙

회의를 개최하고 계속 진행할 수 있는 최소한의 수인 "의사정족수"와 의안의 표결에 필요한 최소한의 수인 "의결정족수"를 지켜야 한다는 원칙

2) 다수결의 원칙

문제의 가부를 결정함에 있어, 3분의 2 이상, 과반수, 종다수 등 일정 이상 다수 측의 수로 가결한다는 원칙

2. 공정한 회의를 위한 원칙

1) 폭력 부정의 원칙

회의에서의 폭력은 회의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임으로 이를 배제하자는 원칙

2) 회의 공개의 원칙

회원의 나태와 사위(詐僞)를 방지하고 회의의 공정한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원칙

3) 사회자 공평의 원칙

회의를 공정하게 운영하기 위해서는 사회자의 공평이 필수임으로 요하는 원칙

4) 회원 평등의 원칙

민주적 회의에서는 성별, 연령, 학력, 지위, 재능 등으로 차별을 받지 않는다는 원칙

5) 발언 자유의 원칙

회원은 주어진 요건 내에서 자기의 의사를 내용이나 형식상 자유로이 발언할 수 있다는 원칙

6) 소수 의견 존중의 원칙

소수는 다수의 의견에 따름이 민주적 회의의 원칙일지라도 소수의 의견이 무조건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

3. 능률적인 회의를 위한 원칙

1) 의제 선포의 원칙

의장은 안건을 심의하기 위해 상정할 때는 그 의제를 반드시 선포(宣告)해야 한다는 원칙

2) 일의제의 원칙

한 가지 의제만을 가지고 심의해야 한다는 원칙

3) 일사부재의 원칙

한 회기에서는 한 의제를 두 번 심의할 수 없다는 원칙

4) 부서 심사원칙

회의체의 규모가 클 경우 안전심의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 해당 전문 부서로 하여금 먼저 심의하게 하자는 원칙

5) 회기 불계속 원칙

심의하지 못한 안건이라도 일정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다음 회기에 자동 상정할 수 없다는 원칙

제 6조 1. 개회 시간이 되면, 의장은 서기로 하여금 회원을 점명케 하여 개회 성수가 되면 개회를 선언한다.

2. 의장은 구두 또는 문서로 인사와 함께 회의의 운영방향 등을 진술할 수 있다.

제 7조 의장(議長)의 권한(權限)과 제척(除斥)

1. 의장의 권한 : 회의가 개최되면 의장은 회의의 원활한 운영과 의사진행의 적정 및 질서유지를 도모해야 한다.

- 1) 의사규정 위반자의 지도 및 제재(주의, 경고)
- 2) 회의 진행 방해자의 퇴장명령
- 3) 개회, 속개 및 속회의 선포 : 이 경우 선포 후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린다.
- 4) 정회 및 산회, 폐회, 파회의 선포 : 이 경우 선포 후 의사봉을 세 번 두드린다.
- 5) 발언의 허가
- 6) 발언 범위의 조절 및 발언의 중지
- 7) 발언 시간의 조절
- 8) 부당한 제안의 거부
- 9) 토론 종결, 다만 종다수의 찬성으로 한다.
- 10) 회의 진행을 위한 위원의 지명
- 11) 표결 방법의 제의
- 12) 녹음 또는 촬영의 허가

2. 의장의 제척(除斥)

1) 의장 자신의 문제에 대한 토론 및 표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2) 의장이 동의를 하거나, 발언코자 할 때는, 본회에서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의장은 의장석에서 물러나, 회원자격으로 발언하여야 한다. 이때, 사회는 부의장이 된다. 해당 안건의 표결이 끝날 때까지 의장석에 돌아갈 수 없다.

제 8조 1. 개회시간이 되어도 의장이 불참하였으면 부회장이 대행한다.

2. 부회장도 불참하였으면 회원 중 직전회장 또는 증경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당회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3. 증경회장이 불참하였으면, 참석 회원 중에서 최연장자 순으로 의장직을 대행한다.

제 9조 회원은, 대한 예수교 장로회 헌법과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원만한 회무 처리를 위하여 의장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개회시간이 되었어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한 시간을 기다리고, 그래도 성수가 되지 못하면, 모인 회원이 다시 모일 시간과 장소를 정하고 산회한다. 다만, 임원의 임기 만료 후에는 상회, 또는 별도 수습위원회의 소집에 따라야 한다.

제11조 1. 의장은 이미 채택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2. 의사일정을 변경하려면, 회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2조 의장은 회순에 따라 상정된 의안을 처리하고, 긴급동의, 의사진행, 규칙발언 등 특별한 안건이 제출되면 이를 우선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13조 회의 진행 중, 규칙에 대한 질문이 있으면, 의장이 먼저 설명하고, 그 설명에 대하여 회원 중 2인 이상이 불복하여 항의하면, 규칙부의 해석을 얻어 처리한다.

제14조 표결은 투표(또는 추첨), 기립, 거수, 발성 등 방법으로 한다.

1. 투표시는 의장도 투표하고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재석 과반수로 결의한다. 단, 추첨 시는 정한 대로 한다.

2. 기립, 거수 표결시는 의장이 미리 가부를 표명하고 가부동수일 때는 부결로 한다.

3. 발성은 “예”와 “아니오”로 하고 “아니오”의 경우는 이유를 묻고 정당성을 판단한 뒤, 결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때는 투표로 해야 한다.

4. 법률안, 인사 문제 등의 표결은, 정한 대로 한다.

제15조 각 부, 위원회에서 제출된 안건(동의안)과 그 외 상정된 의안은 제안 설명, 해당 부서나, 위원장의 심사 결과 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표결한다.

제16조 신 안건은, 회원 중에서 안건을 서면으로 요구할 경우, 서면으로 제출한 후에야 결의한다.

제17조 동의에 재청이 있는 후에 그 동의에 첨가하려면, 동의자와 찬성자의 허락이 있어야 한다. 개의, 재개의 때에도 또한 같다.

제18조 의장은 회순에 따라 안건을 처리하여야 하고, 만일 회순을 바꾸어 안건을 처리하려면, 회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19조 결의된 의안을 그 회기 끝나기 전에 재론코자 하면, 결정할 때, 다수 편에 속했던 회원 중에서 동의와 재청이 있고, 재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가결이 있어야 재론할 수 있으며, 그 의안의 결정은 재석 회원 과반수로 한다.

제20조 각 부, 위원회에서 임원을 선출할 때, 사회자는 피 공천자 중 3년조 선 순위자가 된다. 임원 선출은 참석 회원 2인 이상의 구두호천에 의거, 투표로 한다.

제21조 회의 중 서기는, 회원 수를 파악하여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2조 작성된 회의록은 반드시 폐회 전에 본회에서 받아야 한다.

제23조 안건 순서는 채택된 절차에 따라, (1) 표결에 들어간 미결의 안건, (2) 상회 지시의 안건, (3) 기한부 유의 안건, (4) 조건부 유의 안건, (5) 헌의 안건, (6) 번의 안건, (7) 신 안건 순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 정기총회 회의 진행과 절차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총회 헌법이나, 규칙의 수정안, 또는 개정안이 정당한 절차를 거쳐 총회의 최종 의결을 위해, 성안되어 있는 경우에는 회순에 불구하고, 개회 선언 후에 즉시, 그 안건을 우선적으로 상정하여 표결할 수 있다.

제24조 동의를 성립되어 상정된 의안은, 본회의 허락을 받아야 철회할 수 있다.

제25조 1. 유 안건의 재론 동의나, 폐회 동의, 토론 종결 동의가 성립된 후에는, 의장이 일반 토론은 모두 중지하고, 가부를 결의하여야 한다.

2. 본회의 결의로 구성된 위원회의 조사 보고 안건은, 본회의에서 처리하여야 한다. 타에 이송할 수 없다.

제26조 의장은 상정된 의안을 토론(토의) 중에는 다른 안건을 제안케 할 수 없고, 발언권자의 발언 중에도 다른 안건을 발언할 때는 그 발언을 제지하여야 한다. 단 긴급동의, 의사진행, 규칙발언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7조 1. 기한이 정해져 있는 유 안건은 그 회기 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2. 기간이 지나면 자동 폐기된다.

3. 정해진 기한이 없는 유 안건의 동의는 할 수 없다.

제28조 의장은 성안된 의안에 착오, 규칙 위배 등 중대한 과실이 발견된 때는 가부를 중지하고 수정, 보완 후 결의하여야 한다.

제29조 1. 회원 2인 이상이 발언을 동시 요구할 때, 의장은 의장석에서 제일 먼 자리에 있는 회원에게 먼저 발언권을 허락해야 한다.

2. 안건 토론에 있어서 발언 시간은 3분으로 제안하고, 질문에 대한 답변(설명)은 3분 이내로 하며, 한 회원이 한 의안에 특별허락을 받은 경우를 제외하고 두 번 이상 발언할 수 없다.

제30조 의안 토의 중(발언 중)이거나, 투표 진행 중에는 정회, 또는 폐회 시간이 되어도 그 의안 토의, 또는 투표를 끝날 때까지 정회, 또는 폐회 동의를 할 수 없다. 그 의안이 끝날 때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제31조 동의안의 표결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특별히 정하지 않은 각종 선거, 인사 관계 표결은 무기명 비밀투표로 하며, 투표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안건의 일반적인 처리는 거수 또는 기립으로 할 수 있다.

3. 단순한 안건은 발성에 의한 표결이 가능하다. 이때, 가하면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해야 한다. '아니오' 라고 할 때는, 그 반대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2조 의장은 의안이 양론으로 나뉘게 되면, 찬, 반을 번갈아 언권을 허락하여야 한다.

제33조 발언 중 다른 회원이 기립하여 발언자의 발언을 방해하는 발언을 하거나, 행동을 하였을 때는, 의장은 그에게 경고하고 제지하여야 한다. 만일 불응할 때는 퇴장케 할 수 있다.

제34조 모든 회원은 의장과 회원 상호 간에 존경과 신의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하며 반드시 경어를 사용하여야 한다.

제35조 발언권자의 발언이 법령 규칙 등에 위배 되거나 중대한 과실 또는 타인을 모함하는 등의 발언을 할 때는 의장은 먼저 주의를 주고 그대로 듣지 아니할 때는 발언을 중지시켜야 한다.

제36조 의장은 회의 시작 및 진행 시, 회원 중 회의와 관계없는 잡담, 고성, 소요, 이석, 방청인 등과 사담 등을 금지케 하여야 하고 정숙, 화기애애한 회의장 분위기 조성 및 유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이때 모든 회원은 의장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제37조 의장은 회원이 무례한 언행을 하면, 즉시 제지하여야 하고, 규정을 위배하였을 때는 “규칙(법)”이요 하고 발언하여 즉시 시정케 하여야 한다.

제38조 회의 중 누구든지 의장에게서 불이익 등의 권리침해를 당하였을 때는 즉시 본 회의 때 공소할 수 있다. 공소가 제기되면, 토론없이 의결로 결정한다.

제39조 회기 중 회원의 이석, 불참 등으로 성원이 미달되어 자동 유회케 될 때는 의장이 그 회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소속기관(노회, 지교회 등)에 통보하여 문책하게 한다.

제40조 의장은 안건을 처리함에 있어 공개함으로 그 처리회와 당사자의 명예와 신상에 피해가 생길 우려가 있을 때는 비공개로 회의를 진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회원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

제41조 각급 회의에서 간담회, 토론회 등으로 모일 때에는 회의 규정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의논할 수 있다

제42조 회원이 아닐지라도 그 회의에 직무와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는 의장의 허락을 받아 그 회의에 참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43조 모든 회의는, 기도로 개회하고, 기도로 폐회한다

제44조 긴급동의를, 천재지변이나, 인사 사고, 또는 전쟁과 화재 발생 등 중대한 비상사태 이외에는 할 수 없다.

제45조 폐회 동의는 다음의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채택된 안건을 모두 마쳤을 때
2. 정한 회기가 끝났을 때
3. 그 외에 다루어야 할 안건이 없을 때

제46조 본 규정 제1조에 정한 회의의 개회와 의결(가결)은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과반수로 의결한다.

제47조 총회 마지막 날의 속회 성수는 재적 과반수로 하며, 폐회 시까지 유효하다.

제48조 본 규정을 개정코자 하면 규칙부의 심의를 거쳐 총회원 재석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제49조 본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2017. 6. 12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합보)